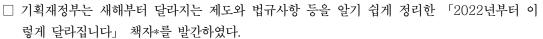
-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 기획재정부, 2022. 1



- * '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
- 이 책자에는 39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304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였다.
- 특히, 이번에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경제 정상화 정책과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 대한 민생지원 정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고 있다.
- □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제·금융〉

-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연구개발·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타기술보 다 우대하여 적용
 - * 신성장 원천기술 대비 공제율: (연구개발) +10%p, (시설투자) +3~4%p
-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소득상한을 가구별로 200만원씩 인 상
 - * 단독: 20→22백만원, 홑벌이: 30→32백만원, 맞벌이: 36→38백만원
-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형 장기펀드(연 납입한도 60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 (공제율 40%)를 적용하는 한편,
 - 청년희망적금(연 납입한도 600만원)을 출시(1분기 예정)하고, 동 적금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교육·보육·가족〉

○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

- * (기초·차상위) 첫째 자녀 연간 700만원(+180만원), 둘째 이상 전액 지원 (다자녀) 8구간 이하 셋째 이상 전액 지원 (서민·중산층) 5~6구간 연간 390만원, 7~8구간 연간 350만원 지원
- 초·중등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교원 필기시험을 교육감에 위탁 ('22.3.25.~)하고 사무직원 채용시 공개전형을 의무화('22.2.11.~)
- 저소득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금액 인상*('22.3월~)* 초등 331천원(+45천원), 중등 466천원(+90천원), 고등 554천원(+106천원)
-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해 전국 가족센터(12개소)에서 자기개발, 상담 등 프로그램 제공

〈보건 · 복지 · 고용〉

-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출생시 첫만남이용권(바우처, 200만원)을 지급('22.4월~)하고, 22 년 출생아부터 만 2세까지 영아수당(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원 확대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휴직 등의 사유에 따른 납부예외자가 납부 재개시 연금 보험료의 50%(월 최대 45천원, 12개월 한도)의 연금보험료 지원('22.7월~)
- 근로자가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지급 시범사업 추진('22.7월~)
 - * 최저임금 60% 수준의 임금 보장
-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전년대비 +440원)으로 인상하여 저임금 근로자 보호
-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종사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등)도 고용보험을 적용함으로 써 고용안전맛 확대

〈문화·체육·관광〉

- 저작권 분쟁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검찰과 연계하여 저작권 분쟁 에 대한 조정을 시범 시행
- 문화 취약계층도 예술, 체육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연간 10만원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22.2.3.~)
 - * 6세 이상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63만명 등

〈환경·기상〉

- 실생활 속 탄소 감축을 하는 확대하기 위해 탄소중립* 실천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 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 * 전자영수증, 리필스테이션, 다회용기, 무공해차 사용 등
- 규모 4.0 이상 ~ 5.0 미만의 지진에 대해 지진속보 발표시간을 20~40초에서 5~10초로 단축하여 대피 여유시간 확보('22.4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수소용품(수소제조설비, 연료전지 등) 제조업체에 대한 허가등록 및 수소용품에 대한 안전 검사 실시('22.2.5.~)
- 민간의 대규모 차량수요자(렌터카 등)에 대한 친환경차 구매 의무화 및 친환경차 충전기 설 치 확대*('22.1.28.~)
 - * (전기차충전) 기존 신축→구축시설까지 충전기 설치 의무 확대 (수소차충전) 국·공유지 내 충전기 구축 시 임대료 감면 한도 확대(50→80%)

〈국토·교통〉

-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심야 할인(30~50%) 제외 * 1년간 2회 위반 시 3개월 할인 제외, 3회 위반부터는 6개월씩 가산
- 국내항공 여객증가 대응을 위해 공항 이용시 짐을 숙소까지 배송해주는 짐배송서비스 운영 공항 확대('22.8월~)
 - * 현재 김포공항 시범 운영 → 김해, 청주 공항 등 확대(변동 가능)

〈농림·수산·식품〉

- 많은 농업인들이 농지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
- 농지원부 정비의 일환으로 작성 기준을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작성 대상을 1천㎡ 이상에서 전체 농지로 변경('22.4.15.~)
- 갯벌의 탄소흡수력 증진을 위해 유휴 갯벌에 염생식물을 복원·조성하는 갯벌 식생복원사업을 신규 추진(4개소)

〈국방·병무〉

- 의무복무 병사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병 봉급을 '21년 대비 11.1% 인상('17년 최저임 금의 50% 수준*)
 - * (병장)676,100원, (상병)610,200원, (일병)552,100원, (이병)510,000원
-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해 전역 시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금액의 적립 분('22.1.2.~)에 대해 1/3을 정부가 추가 지원(3:1 매칭)

〈행정·안전·질서〉

- 기존 여권보다 보안성·내구성 등을 강화한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
-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시행 ('22.1.13.~)

- 주택가 골목길 등 중앙선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는 보행자에 대해 통행 우선권 부여 ('22.4.20.~)
- □ 이 책자는 1월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2,000여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 12월 31일(금) 10:00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되어 열 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 1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 (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 *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에서 최적화되어 보여지는 웹페이지
- □ 특히, 삽화로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은 기획재정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SNS를 통해 발간 전 미리 공개함으로써,
- 다양한 정부정책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획재정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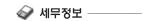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됩니다.

- 기존의 일반, 신성장 원천기술의 2단계 구조에서 국가전략기술 단계를 추가 신설하여 세액공 제율을 우대하여 적용합니다.
- 연구개발비용: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10%p 상향 상향시설투자: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3~4%p 상향(일반 시설투자 대비 +5~6%p)

① 연구개발 비용(%)	대	중견	중소
일반	2	8	25
신성장·원천기술	20-	~30	30~40
국가전략기술	30~	-40	40~50

○ 114E71(0/)	당기분			スコロ
② 시설투자(%)	대	중견	중소	증가분
일반	1	3	10	
신성장·원천기 술	3	5	12	3
국가전략기술	6	8	16	4

■ 대상기술은 국가경제안보 목적상 중요한 반도체, 배터리, 백신 분야 핵심기술로 선정하여 시 행령에 규정할 계획입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연간 총소득기준금액)이 가구 별로 200만원 인상됩니다.

가구 유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현 행
2,000만원
3,000만원
3, 600만원

개 정
2, 200만원
3, 200만원
3, 800만원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청년이 장기펀드에 가입 시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 제합니다.
- 동 제도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경우에 적용 됩니다.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시 적금(연 납입한도 600만원)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 동 제도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이자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난임시술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 및 출산 관련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난임시술 및 미숙아 선천성이상 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확대하였습니다.

■ 난임시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종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종전 15%에서 20%로 확대하면서 공제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특례 한도 확대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특례 한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적용기한이 연장됩니다.

- 기존에는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한 자에 한해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임차한 자로 확대됩니다.
- 또한, 폐업하기 전에 기존 세액공제 요건을 갖춘 자로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은 폐업 임차소상공인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 추가적으로, 적용기한이 기존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됩니다.
- 적용대상 확대 관련 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임대료 수입금액에 대하여 세액공 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미제출 및 불성실 제출 가산세 신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의 성실한 제출을 유도하기 위해 미제출 및 불성실 제출 가산세를 신설합니다.

- (대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필요경비) 산입하여 신고하였으나, 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불성실 제출한 사업자
- (가산세액) 미제출불성실 제출로 구분하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미제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필요경비) 산입액의 1%

- (불성실 제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필요경비) 산입액 중 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
- 개정내용은 개인의 경우 2022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법인의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 상향

영세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 (현행) 30만원 미만
- (개정) 50만원 미만
- (시행) 2022년 1월 1일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또한, 재난 등의 사유 발생 시 예정고지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국세징수법」(제13조 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 유예, 납부기한 연장 인정사유 준용
 - ①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
 - ② 사업에 현저한 손실 발생, 부도 또는 도산 우려
 - ③ 납세자, 동거가족의 질병·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 또는 사망 등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창업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이 연장되고, 생계형창업 중소 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확대됩니다.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가 2024년까지 연장되고, 창업 중소기업 중 감면율을 우대하여 적용하는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의 수입금액 기준이 연간 4,8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 확대

중소중견기업 간 상생결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 * 만기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만기일 이전에도 구매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낮은 수수료 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
- 세액공제 요건이 단순화되고 공제율이 확대됩니다.

	종전			개정
요 건	다음 ①과 ② 모두 충족 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 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어음 결제 비율이 않을 것	전년 대비 증가하지
공제대상	상생결제금액		상생결제금액에서 차감한 금액	현금성 결제 감소분을
	지급기일	공제율	지급기일	공제율
공제율	15일 이내 지급	0.2%	15일 이내 지급	0.5%
	16~60일 지급	0.1%	16~30일 지급	0.3%
			31~60일 지급	0.15%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기술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등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미래 먹거리 발굴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신성장 원천기술연구개발비용 세액 공제 대상이 확대되고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됩니다.

- 현재 12개 분야 235개 기술에 탄소중립, 바이오기술 등이 추가될 예정(시행령 개정)입니다.
- 현행 공제대상 기술을 3년 단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여 적용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세액감면 적용 후 특구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신설

지역균형발전 및 투자유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사후관리규정이 없는 특구제도에 사후관리 규정이 신설됩니다.

- (적용대상 특구) 위기지역, 농공단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연구개발특구, 제주첨단과학기 술단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도시,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 (사후관리 규정) 감면적용 이후 감면대상 사업장 등을 폐업해산하거나 해당 특구 外 지역으

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 납부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해산하거나 사업장을 특구지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터 적용됩니다.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 성과공유 확산을 위해 성과공유 중소기업 특례 지원이 확대되고 적용기한이 연장됩니다.

- 세액감면 대상 경영성과급 요건이 단순화되고,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이 상향됩니다.
 - (성과급 요건) 영업이익 발생 요건 삭제
 - * (종전)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에 한해 적용→ (개정) 영업이익이 발생 하지 않은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에 대해서도 적용
 - (중소기업 공제율) 10% → 15%로 상향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국외제작비용 포함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해 국외에서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제작비용부터 적용됩니다.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 적용대상 경력단절 여성의 요건이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취업한 경우로 확대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24년까지 연장되고, 20212022년 한시적으로 수도권 외 기업의 청년장애인60세이상 근로자에 대한 상시근로자 증가 시 공제금액이 100만원 상향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

도까지의 기간 중 상시근로자가 증가하는 경우에 대해 적용됩니다.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

정규직 전환 유도를 위해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1년 연장되고, 요건이 정비됩니다.

- 세액공제 요건에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된 경우가 추가되고, 공제대상에서 특수관계 인이 제외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위해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사후 관리규정이 보완됩니다.

- 중소기업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공제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 사후관리규정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 하여 받은 세액공제 분부터 적용됩니다.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요건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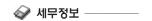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 투자규모와 근무인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준은 '22년 1분기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예정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소득법인세 감면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유턴기업 세액감면 요건이 완화되고 적용기한이 연장됩니다.

■ 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양도폐쇄축소 후 2년 이내에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한 경우에도 세액감 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국내복귀 기한요건이 완화됩니다.



■ 국내복귀 요건은 '22년 1분기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공사부담금 투자세액공제 배제

중복지원 배제를 위해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투자한 금액은 투자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시기 단축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조기지급 및 과다지급분 차감에 따른 정산부담 최소화를 위해 반기 근로 장려금의 정산시기를 정기분 지급 시(다음해 9월)에서 하반기분 지급 시(다음해 6월)로 3개월 단축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중소·중견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 상향

중소·중견기업 취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통한 청년의 안정적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이 성과보 상기금*으로부터 수령하는 공제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당초 50%에서 90% 로, 중견기업의 경우 당초 30%에서 50%로 확대하였습니다.

- *핵심인력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부터 적용 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합리화

성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가산세의 산출방식을 변경합니다.

- 기존에는 가산세를 산출세액의 일정비율(5%)로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산출세액의 일정비율과 수입금액*의 일정비율(0.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개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법인) 수입금액
- 개정내용은 개인의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법인의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경감기간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부과되는 가산세의 부과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해당 가산세의 경감기간이 확대됩니다.

- 기존에는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자진신고·발급 시 가산세율이 20%에서 10%로 경감되었으나, 해당 경감기간을 7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 부징수 기준금액 조정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 부징수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50 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

중소기업의 자금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발생한 결손금에 한하여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을 2년으로 확대합니다.

- 중소기업에 대해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인세 납부세액을 한도로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하고 있으나, 2021년 발생한 결손금에 한하여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2년*으로 확대 *직전 과세연도 및 직직전 과세연도
- 개정내용은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소 득요건을 완화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 동 제도는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40% 소득공제)에 더하여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

득에 대해 비과세 함(비과세 한도 연 500만원)으로써 청년층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적용기한은 2년 연장(~'23.12.31.)하였습니다.
 - * 총급여액 기준 : (현행) 3,000만원 이하 → (개정)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기준 : (현행) 2,000만원 이하 → (개정) 2,600만원 이하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해외부동산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강화

혀 햇

역외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부동산 보유내역에 대해서도 자료제출 의무가 부과됩니다.

해외부동산 자료제출 의무		
구분	제출내용	
취득 시	취득내역	
투자운용(임대)시	투자운용내역	
처분 시	처분내역	
〈추 가〉		

개 정		
●자료제출 의무대상 추가 - 해외부동산의 보유 포함		
구분	제출내용	
취득 시	취득내역	
투자운용(임대)시	투자운용내역	
처분 시	처분내역	

보유내역

보유 시

- ※ 미제출·거짓제출 시 과태료 부과(1억원 한도)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과태료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부터 부과됩니다.
 -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 제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포함

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 가상자산과 관련한 세원정보 확보를 위하여 가상자산 거래계좌*를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추가하였습니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국외에 있는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에 개설한 계좌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내국법인은 해외 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

부모봉양에 대한 상속세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허용합니다.

- 공제 대상자 : 직계비속만 적용 가능 →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허용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중견기업에 대한 기업상속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견기업의 기업상속 공제 요건을 완화합니다.

- 공제 대상자 : 중소기업과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 → 매출액 4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도 공제 허용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영농상속공제 공제한도 확대

영농상속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 공제한도를 상향조정합니다.

- (현행) 15억원까지 공제 허용
- (개정) 20억원까지 공제 허용
- (시행)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상속세 납부와 관련한 납세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연부연납 대상기간을 확대합니다.

- (현행) 5년 동안 상속세 연부연납 가능
- (개정) 10년 동안 상속세 연부연납 가능
- (시행)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전자적 용역에 대한 거래명세 보관·제출제도 신설

전자적 용역에 대한 세원관리를 위해 간편사업자에 대한 거래명세 보관 및 제출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 간편사업자는 국내에 공급한 전자적 용역에 대한 거래명세*를 확정신고기한 후 5년간 보관해 야 합니다.
 - *사업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경우(B2B) 포함
- 간편사업자는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명세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해당 요 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 거래명세서 서식은 '22년1분기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
- 개정내용은 2022년 7월 1일 이후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개인의 소액 자가사용 물품 관세 환급 확대

2022년부터는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개인의 소액 자가사용 물품*에 대해서는 반품(수출)한 후 수출사실에 대해 세관장의 사후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200만원 이하
- 종래 개인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 반입 또는 세관장 확인을 받고 반품(수출)한 경우에만 관세 환급이 가능했습니다.
- 세관장의 사후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외운송장, 판매자 발행 환불영수증 및 반품증명자료 등 필요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수출되는 물품부터 적용됩니다.

원양어선용 선박·어로용품 통관절차 간소화

2022년 1월 1일부터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선박·어로용품'은 세관장의 적재 허가를 받은 후, 관세 납부없이(외국물품인 경우) 바로 선박에 적재하여 사용·소비가 가능합니다.

- * (선박용품)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집기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어로용품) 어구(漁具), 조상기, 오타보드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지금까지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선박·어로용품'은 바로 선박에 적재를 하지 못하고 수출입통관 및 환급절차를 거쳐야 하는 업무 부담이 있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관세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합리화

통관질서 성격의 관세법상 의무(일시양륙·환적 신고의무 및 입항전 적재화물목록 등 제출의무)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처벌수준을 완화하였습니다.

- 또한, 출항허가 신청 전 적재화물목록 제출 요구 불응 시에도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또한, 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금지규정(관세법 제223조의2) 위반 시에 '1천만원 이하 법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해당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빙서류 간소화

수출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편의 제고를 위해 원산지증빙서류가 간소화됩니다.

- 수출품목이 원산지 간이확인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또는 원산지인증수출 자인증 신청 시 원산지소명서 대신 작성이 간편한 국내제조확인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 * 원산지간이확인품목 : 제조공정의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국내산임을 확인 할 수 있는 품목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또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싱가포르 일시수출입물품 관세 면제

수리·개조를 위해 싱가포르로 일시수출 되었다가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자유무역협정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 일시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수입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감면신청 서와 감면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 해당 물품이 수리·개조를 위해 싱가포르로 수출되었다가 재수입되었음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서류(예시: 수출신고필증, 임가공 계약서 등)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됩니다.

전자적 시스템 활용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자유무역협정에 근거하여 관세당국 간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교환하는 국가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 중국 및 인도네시아의 경우처럼 협정에 근거하여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이 구축 완료된 경우에 적용되며, 앞으로 다른 자유무역협정 상대국들과도 협의하여 적용국가를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 수입자는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기 전에 관세청 FTA포털사이트(www.customs.go.kr)를 통해 원산지정보 교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협정관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 면제대상 확대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빙서류에 오류가 발견되어 수입자가 협정관세를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가산세면제대상이 확대됩니다.

■ 현재는 '원산지증빙서류 작성자'와 '수입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으로부터 오류를 통보받아 세액을 수정신고 하는 경우,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원산지를 심사한 세관장'으로부터 오류를 통보받고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 가산세를 면제받으려는 수입자는 오류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서 원산지조사 통지를 받기 전까지 세관장에게 세액을 수정신고 해야 하며,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를 통보받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국유일반재산 민원처리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 도입

국유일반재산의 각종 신청 및 결과확인을 현장사무실 방문없이 온라인에서 고객이 직접 조회·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대부・변상금・매각 관련 신청, 단계별 처리이력 및 결과 등을 온라인*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국유일반재산 온라인 서비스: https://gpminwon.kamco.or.kr
- 신청자의 업무담당자, 검토기한 등의 정보 및 계약내역납부/납부예정 내역 등을 확인하고 계약서 · 영수증 출력도 가능합니다.
- 고객의 단순 문의요청 업무에 업무시간 외에도 실시간 상담이 가능한 챗봇을 통해 대기없이 기본 안내를 제공합니다.
- 국유일반재산 온라인서비스는 2022년 1월 3일부터 개시됩니다.

국가계약 시범특례사업 도입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의 기준·절차 등과 관련하여 업무 특성·계약 목적물의 혁신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계약법과 다른 절차를 적용한 시범특례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승인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2년 이내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시범특례사업 종료 후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계약법령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공공공사 입찰 시 안전평가 강화 시행

입찰공고되는 대형 공공공사에 대한 입찰심사 시 안전평가가 강화됩니다.

■ 대형 공공공사의 입찰심사기준인 종합심사낙찰제(100억원 이상)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200억원 이상 기술공사)의 안전관리 평가를 대폭 강화하여 시행합니다.

- 사고사망만인율 평가를 (現) 가점 → (改) 가감점으로 전환*하여 변별력을 강화하고.
 - * 그간 사고사망만인율이 업계 평균보다 낮은 업체에 대해 가점 부여 → 모든 업체에 가감점 부여로 개선
- 재해예방활동실적, 행정형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목적외 사용금지 등의 항목을 종합심사 낙찰제 안전평가항목으로 추가하여 평가합니다.

국세청

공익법인 의무이행 점검업무 이관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점검기관이 국세청으로 변경됩니다.

- 종전에는 각 주무관청에서 이행하였던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점검업무가 국세청(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세무서)으로 이관됩니다.
 - *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여야 함
- 다만, 법인세법 제24②1호에 따른 공익법인*(구, 법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의무이행 점검업무 는 종전과 같이 각 주무관청에서 이행합니다.
 - *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지정기간 만료전 공공기관(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④ 별표 6의7)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의무이행점검부터 적용됩니다

과세자료 관련 과태료 도입 제출대상 사업자 확대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미제출 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도가 시행되고, 제출대상 사업자에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자가 추가됩니다.

- 국세청이 과세자료 미제출 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고, 해당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징수합니다.
- 또한,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 플랫폼을 통해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경우, 알선중개업체가 아닌 해당 플랫폼 사업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 적용됩니다.